

선	기관의 장
람	



제 603 호

2004년 11월 23일 화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2004-743호(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2004-744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농정원조례중개정조례) 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2004-745호(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8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2004-746호(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12

회 람								
--------	--	--	--	--	--	--	--	--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43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중 “심사분석”을 “자체평가”로 하고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 내지 “제6호”를 “제6호” 내지
“제7호”로 한다.

5. 혁신·분권·균형발전업무

8. 정보(전산)에 관한 업무

제5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 관광진흥

제6조 제1항중 “자치행정과”를 “경영재정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

조례 제677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자치행정과”를 “경영재정과”로 하고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제677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존속기한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관련 “별표1” 내지 “별표3” 실과별란의 “자치행정과”를 “경영재정과”로 한다.

□ 개 정 사 유

-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5. 6.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서내 분장사무와 맞지 않는 기구(과)명칭과 실·국의 누락사무를 적의 조정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은 물론 선진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총무국내 “자치행정과”의 과 명칭을 “경영재정과”로 함(안 제6조제1항)
-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중 “심사분석”을 “자체평가”로 하고 “혁신·분권·균형발전업무”와 “정보(전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조)
- 문화홍보실의 분장사무에 “관광진흥”을 신설 (안 제5조)
- 총무국의 분장사무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 (안 제6조제2항)
- 조례 제677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항에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명칭을 경영재정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44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 : 696명
3. 총 계 : 714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 정 사 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법률 제7188호, '04.3.11)으로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사회적재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 및 정원 보강지침과 관련 동 업무추진 정원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여 중앙-지방간 업무연계를 통한 사회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집행기관의 정원 “695명”을 “696명”으로 조정(안 제2조제1호)
- 총계의 정원 “713명”을 “714명”으로 조정(안 제2조제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 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45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한 사항과 문화원의 사업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육성대상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문화원이어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용도)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4.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7.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원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산의 출연 등) ①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준속·시설·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원에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② 출연금은 1억원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6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국·공유 재산의 사용) ①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

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구민문화교육, 문화재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을 구위회의 동의를 얻어 문화원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문화원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는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문화원의 보조금 출연금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보조금은 지역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선양 등의 사업 추진에 지원. (안 제3조)
- 문화원의 설립준속·시설·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원에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 (안 제5조)
- 구청장은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구민문화교육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대행 (안 제8조)
- 축제행사 지원 등 문화원 특수사업의 목적달성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명함. (안 제9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46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1관련 제증명수수료 (증명)란 중 6.기타제증명란에 (3)과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 중 3.건설 및 도시계획 관계란에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증명)			
6. 기타제증명			
(3)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3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3. 건설 및 도시계획관계			
(12)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및 열람			
가. 확인	1필지	1,000원	
나. 열람	1필지	100원	

■ 개정사유

- 자동차등록업무의 구 이관에 따른 자동차 수수료 징수규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통합개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증명수수료 징수규정 보완.

■ 주요내용

-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 1통 1,300원
 - ⇒ 기존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거
-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
 - 확인 : 1필지 1,000원, 열람 : 1필지 100원
 - ⇒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의 수수료 규정에 의거
 -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로 통합개정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